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9월 4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박한권)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의 개정(법률 제9468호, 2009. 2. 12. 공포·시행)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규정함.(안 제3조)
-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

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외국인 투표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	○ 투표공고일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조례상 투표청구 주민수가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 특별히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는가?	○ 표준안에 의한 조례이며, 대도시의 경우 그 비율이 조금 낮음. (이상 자치행정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¹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4호
의결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주민투표법」의 개정(법률 제9468호, 2009. 2. 12. 공포·시행)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체수단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8조제1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중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부 천 시 장 (직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부 천 시 장 귀하</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 및 「부천시 주민투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천 시 장 (직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한다.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③ (생략) <신 설>	제2조(시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외국인으로서는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는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u>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u>,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할 있다</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u>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다만, 열람하는 주민이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 ----- ----- <u>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u> ----- ----- -----.</p> <p>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발췌서>

○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09.2.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6.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서명부의 작성·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